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5. 2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5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5. 21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곽소득)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의 행정동 중 구평동사의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조례(별표)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표 중 구평동사무소의 위치 “구평동 207”을 “구평동 232”로 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1993. 5. 10부로 구평동사무소를 현 위치인 마을회관으로 이전하여 집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)